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3-20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5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9누523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A

[redacted]

[redacted]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시장

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. 7. 12. 선고 2018구합55283 판결

변 론 종 결 2019. 12. 2.

판 결 선 고 2020. 1. 22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7. 12. 13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00,546,650원(가산세 포함), 지방교육세 19,288,560원(가산세 포함), 농어촌특별세 15,949,900원(가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3-20

세 포함)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배광국

판사 김종기

판사 장철익